

□ **신청자격** : 사업공고일 기준, 폐업(예정)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

- ▶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* 중 공고일 기준 폐업**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
* [별첨1] ‘소상공인 기준’ 참조
**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‘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함
- ▶ [별첨2] ‘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 대상’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▶ 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상 사업 운영 기간 60일이 경과한 사업체의 대표
- ▶ 취업 교육은 폐업(예정)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가능
* 폐업 소상공인 나이가 만 69세를 초과하여도 배우자의 나이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
- ▶ 전직장려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폐업(예정) 소상공인의 배우자 지원 불가

□ **지원내용** : ① **취업교육**(기초+심화) 및 ② **심리회복 프로그램**, ③ **전직장려수당**(^{1차}60만원 + ^{2차}40만원) 및 ④ **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**

① 취업교육(기초+심화)

- (지원대상) 폐업(예정) 소상공인 및 폐업(예정) 소상공인의 배우자
- (지원규모) 10,400건 내외
- (지원절차) 기초→심화 단계별 교육 (교육별 연 1회 수강 제한)
- * 단, '25년 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심화교육을 수강하지 않았다면, '26년 취업 기초교육 수강을 생략하고 심화교육 신청·수강 가능함
- (지원내용) e러닝 및 현장 교육으로 1개월 내외 **취업 역량 강화 교육**

구분	세부 사항	
기초교육	■ (대상) 폐업(예정) 소상공인,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 ■ (방식) e-러닝 교육 / 10h 이상 * '26년부터 지식배움터 인정시간 기준 * 교육생 선정 이후 지정된 교육기간 내 수강하지 않으면 최종 미수로 처리함 ■ (내용) 취업 기초, 재취업 성공 마인드 세팅, 재취업 관문통과 기술, 자격증 및 지원 정책 활용 등 20개 과정 (5개 이상 수강 및 학업성취도평가 후 수료 인정)	
	주제	과정별 세부 내용
	① 취업기초	• 변화관리/자아성찰/진로탐색/재취업시장 트렌드 이해
	② 취업 성공 마인드	• 재취업 성공 스토리/성공 면접 사례 분석
	③ 취업 관문통과 기술	• 목표설정 • 직종/업종/경력유형별 자기소개서·면접 준비 기술 • 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재취업 성공 포인트 도출
	④ 자격증 및 지원정책	• 자격증/취업지원 정책 활용

구분	세부 사항
심화교육	■ (대상) 취업 기초교육 수료자 ■ (방식) 대면교육 / 2~3주, 30h 이상 ■ (내용) 1:1면담, 구직자 정체성 확립, 구직 효능감 제고, 분임토의 등 현장 교육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방법 안내 등 - 교육 수료 시 교육 참여수당 35만원(소득세 포함) 지급

- (제출서류) 개인정보수집·이용/제공동의서,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

가. 폐업(예정) 소상공인 본인

순번	제출 서류	제출 방법	비고
1	신청서 및 체크리스트	온라인 작성	-
2	개인정보 수집·이용/제공동의서	온라인 작성	-
3	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	직접 발급 후 제출(택1) * 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생략	폐업 예정자 폐업자
4	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	직접 발급 후 제출(택1) * 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생략	매출액 확인
5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* 상시근로자 無 건강보험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,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개인별건강 보험고지산출내역,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(고용,산재) * 상시근로자 有	직접 발급 후 제출(택1) * 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생략	상시근로자 수 확인

* 교육 신청 시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할 경우 서류 제출 생략 가능

** 마이데이터로 확인 불가한 정보는 공단에서 **추가 증빙서류 제출**을 요청할 수 있음

나. 폐업(예정) 소상공인의 배우자

순번	제출 서류	제출 방법	비고
1	신청서 및 체크리스트	온라인 작성	-
2	개인정보 수집·이용/제공동의서	온라인 작성	-
3	배우자 주민등록등본	직접 발급 후 제출	가족관계 확인
4	배우자 취업교육 참여 동의서	업무편람 서식[11] 제출	-

②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

- (지원대상) 폐업(예정) 소상공인 * 동반자 1인 동행 가능
- (지원절차) 회차별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→ 소상공인 참여 신청 → 공단의 선정 통보 → 프로그램 개별 참여
- (지원내용)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감 개선 위한 치유 프로그램
 - * 심리회복 효과 지속을 위해 1인당 연간(당해년도) 총 3회까지 참여 허용 (지역에 상관없이 전체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총 3회까지 참여)

< (예시) 심리회복 프로그램 >



- *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세부 계획에 따라 지원 세부 내용 변동 가능
→ 실제 지원 내용은 '소상공인24' 내 심리회복 회차별 프로그램 신청 화면 참고
- (참여방법) 프로그램 운영 기간·장소에 따라 참석자 개별 이동
- (운영일정) 회차별 모집 현황에 따라 실제 운영 일정 변동 가능
- * 최소 참여 기준 인원 미달 시 폐강

<신청 유의 사항>

- **(선정 기준)** 참가자는 신청순으로 선정하되 회차별 프로그램 신청자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, 아래 순서에 부합하는 순으로 우선 선정 처리함
 - ① 심리회복 최초 지원 소상공인
 - ② 특정 프로그램(지역 등) 최초 지원 소상공인
 - ③ 위 ①, 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
 - **(제외 기준)** 선정된 참가자가 프로그램에 최종 불참한 경우, 공단은 해당자가 당해 연도 심리회복 프로그램에 재신청할 시 선정 제외할 수 있음
 - ① (불참 1회) 무단 불참 지역 재신청 시 선정 제외
 - ② (불참 2회 이상) 당해 연도 전체 심리회복 프로그램 선정 제외
- ※ 사유: 심리회복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및 타 지원자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

③ 전직장려수당(최대 100만원 분할 지급)

< '26년 주요 변경사항 >		
• (지원요건) 취업 심화교육 필수 수료 / 취업·근속 인정 기준 강화		
구분	2025년	2026년
지원금액	• (1차) 60만원 (76.9만원 : 소득세 포함) • (2차) 40만원 (51.3만원 : 소득세 포함)	• (1차) 60만원 • (2차) 40만원
지원요건	• (1차) 심화교육, 취업완료 등 구직 • (2차)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	• (1차) 심화교육 수료 • (2차) 심화교육 수료 후 취업하여 60일(2개월) 이상 근속

- (지원대상) 폐업 소상공인 ※ 배우자 미지원
- (지원규모) 9,040건 내외
- (지원내용) 1차 60만원, 2차 40만원 등 최대 100만원 수당 지급
- (지원요건) 차수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·지급 가능

구분	세부 요건
1차 (60만원)	■ 신청인 사업체 폐업 신고 완료(폐업신고일 '23년 이후인 자) ■ 신청인 명의의 모든 사업체 폐업 상태 확인 ■ '25-'26년 취업 심화교육 수료
2차 (40만원)	■ 1차 지급 완료 후 2차 신청 가능 ■ '25-'26년 취업 심화교육 수료 후 취업 - 취업한 사업장에 상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(근속)기간이 60일 이상 ■ 신청인 명의의 모든 사업체 폐업 상태 확인

※ '26.1.19.부터 전직장려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, '26.1.18.까지 취업을 완료 (고용보험 취득일 기준)한 경우는 '25년 전직장려수당 지급 기준 적용 가능

- (지원제외) 미폐업자*, 상기 요건 미충족한 자, 심화교육 수료 전 이미 취업한 자, 최근 3년간 전직장려수당 지급 이력이 있는 자 등
- * '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' 상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가 비영리법인(80) 또는 비영리단체(82)이거나,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불가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제외
- (신청기한) 1차 수당은 심화교육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, 2차 수당은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신청
- (제출서류)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,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

가. 1차(60만원) 신청

순번	제출 서류	비고
1	신청서	온라인 작성
2	개인정보 수집·이용/제공동의서	온라인 작성
3	폐업사실증명원	세무서 또는 온라인(국세청 홈택스) 발급
4	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	세무서 또는 온라인(국세청 홈택스) 발급 *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
5	통장사본	신청인 명의 계좌
6	(취업 시) 근로계약서 (퇴사 시) 경력증명서	(해당 시) 신청인이 취업한 기업 (해당 시) 신청인이 퇴사한 기업
7	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* 전제이력발급, 직종명(코드)포함	(해당 시)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(total.kcomwel.or.kr) * 일용직, 특수고용직 불인정

* 취업관련 서류(6, 7번)은 기초교육 수료 후 취업완료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

나. 2차(40만원) 신청

순번	제출 서류	비고
1	신청서	온라인 작성
2	개인정보수집·이용/제공동의서	온라인 작성
3	폐업사실증명원	세무서 또는 온라인(국세청 홈택스) 발급
4	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	세무서 또는 온라인(국세청 홈택스) 발급 *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
5	통장사본	신청인 명의 계좌
6	(취업 시) 근로계약서 (퇴사 시) 경력증명서	신청인이 취업한 기업 신청인이 퇴사한 기업
7	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* 전제이력발급, 직종명(코드)포함	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 (total.kcomwel.or.kr) * 일용직, 특수고용직 불인정

- (유의사항) 사업 예산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전직장려수당 신청·접수는 연중 조기 마감될 수 있음
- 전직장려수당은 3년 주기 재지원을 허용함
 - * 사업 시행연도 기준 직전 3개년 내에 수당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, 전직장려수당 1차부터 신청 가능함
 - ** 직전 3개년 내에 1차 수당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,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라면 나머지 2차 수당 신청 가능함(1차 신규 신청은 불가)
- 전직장려수당 차수별 지급 금액은 신청인 기지급 금액, 예산 현황,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 등에 따라 한도 내 조정하여 지원 가능

※ [참고] 유형별 전직장려수당 신청 가능 여부

○ : 완료
● : 신청 가능
X : 신청 불가

유형	공고일 이전(~'26.1.18.)				공고일 이후('26.1.19.~)					비고
	교육		취업	전직 1차	교육		취업	전직		
	기초	심화			기초	심화		1차	2차	
1	○	○	-	-	-	-	-	●	-	-
2	○	○	-	-	-	-	○	○	●	• 취업 후 60일 이상 근속
3	○	○	○	-	-	-	-	○	●	•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
4	○	○	○	○	-	-	-	-	●	•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
5	○	-	-	-	-	○	-	●	-	-
6	○	-	-	-	-	○	○	○	●	• 취업 후 60일 이상 근속
7	○	-	○	-	-	-	-	●	-	• '25년 신청 요건 인정 - (1차) 기초교육+취업 - (2차)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
8	○	-	○	-	-	-	-	○	●	
9	○	-	○	○	-	-	-	-	●	• '25년 신청 요건 인정 - (2차)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
10	○	-	-	-	-	-	○	X	-	• 심화교육 미수료 인정 불가
11	○	-	-	-	-	○	○	●	-	• '26년 취업 전 심화교육 수료 시 인정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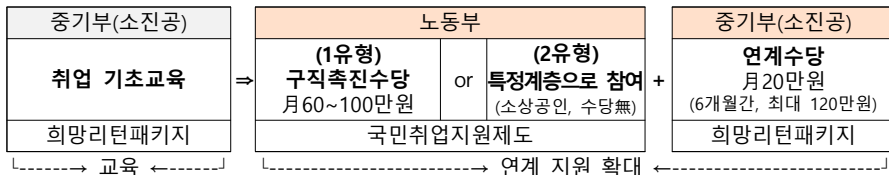
* 유형 3, 4, 7, 8, 9 : '26.1.18.까지 취업을 완료한 경우, 전직장려수당 신청 요건의 취업 후 근속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인정 가능

** 유형 10, 11 : 2025년 기초교육 수료 후 2026.1.19.이후(1.19.포함) 취업을 완료하였으나, 2025~2026년 심화교육 수료 이력이 없는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원 대상으로 인정 불가

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

- (지원대상) 취업 기초교육 수료자('25년 이후 수료) ※ 배우자 미지원
* 단, 매월 대상자 확정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로 확인된 자에 한함
- (지원규모) 18,000건 내외
- (지원절차) 취업교육(기초 이상) 수료→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→수당 지급
*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먼저 참여하고 취업교육을 추가 수료하여도 지원 인정
- (지원내용)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지속적 구직활동을 위해 **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연계 수당*** 지급

< 희망리턴패키지+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절차 >



※ 연계수당은 심화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전직장려수당(1, 2차)과 별건

- (지원방법) 취업 기초교육 수료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 자동 확인 후, 참여 상태 확인일의 다음 달 말일에 차수별 수당 지급*
* 기초교육 신청서의 계좌정보로 지급하며, 필수 서류 제출 등 별도 신청 절차 없음
- (유의사항)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상태가 '종료', '유예'로 확인 되는 등 연계 수당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지원 종료됨

[참고]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

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상담해방 온라인 신청 (work24.go.kr)	 오프라인 신청 (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)	 신청 대행 (공단 지역센터/심화교육기관)
---	---	---

*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관련 문의: (국번없이) 1350

3

기타 참고사항

□ (추진일정)
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취업교육	기초											
	심화											
전직장려수당												
국취 참여 연계												
심리회복												

※ 교육기관 운영,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□ (신청기간) 26년 1월 ~ 예산 소진시 까지

구분	신청기간	비고
취업 기초교육	'26. 1월 중 ~ '26. 11. 30.	-
취업 심화교육	'26. 2월 중 ~ '26. 11. 30.	교육기관별 교육 일정 상이함
전직장려수당	'26. 1월 중 ~ 예산 소진시	-
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	'26. 1월 ~ 예산 소진시	-
심리회복지원	'26. 2월 중 ~ '25. 11. 30.	-

□ (문의처)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-0100,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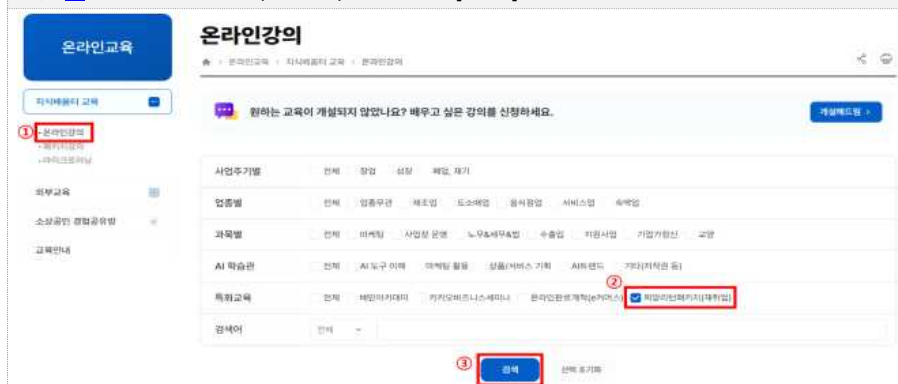
참고 1 취업 기초교육(e러닝) 수강 방법

- (교육 신청) ① 소상공인24(sbiz24.kr)에서 기초교육 신청·선정*된 이후
 ② 공단 지식배움터(edu.sbiz.or.kr)에서 e러닝 교육 수강
 * (기초교육 신청방법) 소상공인24 로그인 → 소진공 공고조회 → '26년 특화취업지원 기초교육 모집공고 → 회차별 교육 신청 → 선정
- ※ 신청인의 소상공인 여부 확인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, 교육 수강 전 소상공인24에서 신청·선정 과정 필요함
- (수강 방법) 공단 지식배움터에 게시된 “희망리턴패키지(재취업)” 카테고리 교육 중 희망하는 5개 이상 과정(10시간) 신청 후 수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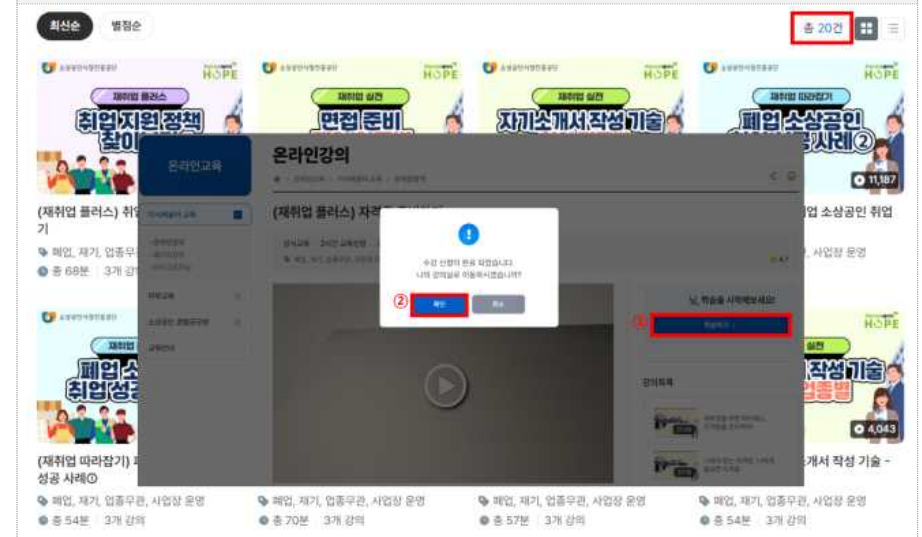
① 지식배움터 접속(로그인必) → [온라인교육] 클릭 → [온라인강의] 클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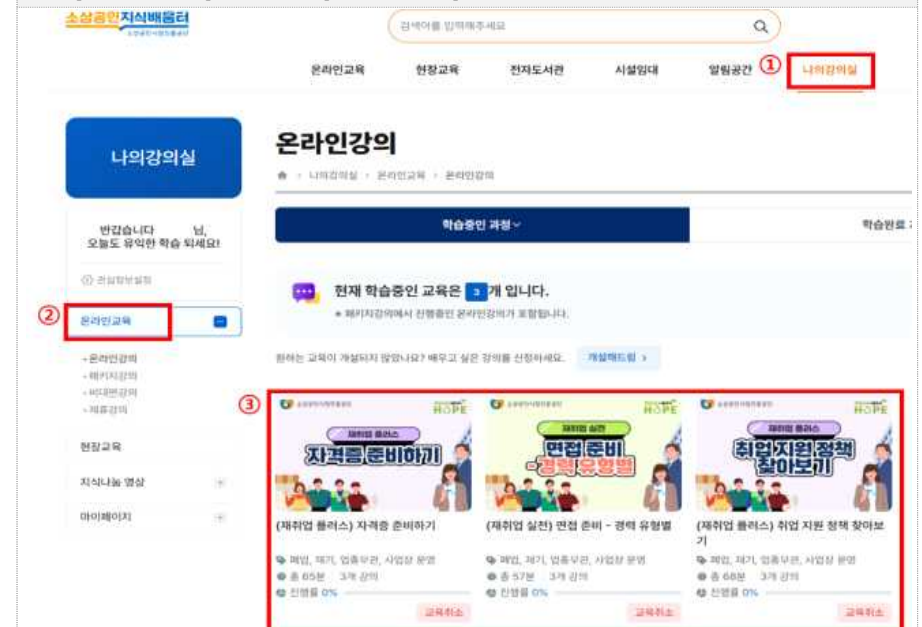
② [희망리턴패키지(재취업) 선택] → [검색] 클릭



③ 기초교육 e러닝 콘텐츠(20개) 중 수강 희망하는 교육 5개 이상 선택 후 “학습하기”



④ [나의강의실] 클릭 → [온라인교육] 클릭 → 신청 과정별 학습



참고 2

전직장려수당 Q&A

❶ 저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배우자입니다. 제가 심화교육 수료 또는 취업한 상황인데 전직장려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☞ 전직장려수당은 폐업한 소상공인 본인만 지원합니다.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는 취업 교육만 추가 지원합니다.

❷ 제 명의의 다른 사업장은 폐업하였으나, 부동산 임대업은 계속 운영 중입니다. 전직장려수당 신청 가능한가요?

☞ 전직장려수당은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이 폐업한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.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 운영 중이라면 지원 불가합니다.

❸ '25년에 전직장려수당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데 신청하지 못했습니다. '26년에 그대로 신청할 수 있나요?

☞ 전직장려수당 신청 요건은 당해연도 사업 공고문을 따릅니다. '26년부터 전직장려수당 신청 요건이 변경되어,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❹ 과거에 전직장려수당을 받았는데 '26년에 다시 신청되나요?

☞ 최근 3년간('23~'25년) 일괄 또는 2차 전직장려수당 지급 이력이 없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
❺ 폐업 후 취업했는데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. 전직장려수당 신청 가능한가요?

☞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, 도급계약 등 개인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은 형태는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☞ 또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 계약기간, 취업처 등을 확인하여 안정적인 임금근로자 전환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
별첨 1

소상공인 기준(규모,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)

❶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

해당기업의 주된 업종	근로자 기준
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	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
그 밖의 업종	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

❷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('25.9.1.)

해당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
2. 1차 금속 제조업	C24	
3. 식료품 제조업	C10	
4. 음료 제조업	C11	
5.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6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7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8.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9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17. 수도업	E36	
18. 운수 및 창고업	H	
19. 금융 및 보험업	K	
20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
21. 광업	B	
22. 담배 제조업	C12	
23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4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5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7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9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C31	
30. 기타 제품 제조업	C33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31. 건설업	F	
32. 도매 및 소매업	G	
33. 정보통신업	J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)	S(S94 제외)	

[비고] 1.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2.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별첨 2 **지원제외 업종(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)**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유탐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

표준산업분류	업 종
	개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익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